#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55

발의연월일: 2022. 4. 7.

발 의 자: 박상혁 · 송재호 · 정성호

최기상 • 어기구 • 신동근

유후덕 • 서삼석 • 최인호

임호선 · 민형배 · 김정호

안호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번호판의 탈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부착 시 자동차 소유자가 광역단체장에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도 매번사전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부착을 위한 봉인은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신청・발급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 및 비용상 비효율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긴급상황으로 인한 번호판 탈부착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현장에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자동차 정비 기 간동안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정비업자가 광역단체장에게 봉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봉인의 신청, 장착,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토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항).

법률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제53조에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뗸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 부착하여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생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 (2) ---------시·도지사의 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 허가를 받은 경우와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정비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와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 3 -----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 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 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 시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 -----. 다만, 제1항에도 불 설> 구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 판 및 봉인을 뗀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시·도

	지사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다시 신청하여 부착하여야
	<u>한다.</u>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